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140 제출연월일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제9호 중 "그 밖에 동물의"를 "동물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업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|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| | |
| ①・② (생 략) |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 | |
|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 | ③ | | |
| 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| | | |
| 같다. | . | | |
| 1. ~ 8. (생 략) | 1. ~ 8. (현행과 같음) | | |
| 9. <u>그 밖에 동물의</u> 구조·보호 | 9. <u>동물의</u> | | |
|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| | | |
| 령으로 정하는 업무 | | | |
| <u><신 설></u> | <u>10. 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</u> | | |
| |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 | | |
| | 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| | |
| ④ ~ ⑦ (생 략) |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| | |